

「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, 시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7조~제8조)
- 위원장의 직무 및 그 대행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9조)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10조~제11조)
- 실무위원회 및 운영세칙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12조~제13조)
- 조항별 장 구분(안 제1장~제4장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고용정책 기본법」

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

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「지방자치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일자리 정책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일자리추진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취업·창업 컨설턴트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,
- 일자리추진위원회 설치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수립과 구미시 관내의 취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